

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

□ 관세법(이하 ‘법’ 이라 함)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41조제1항에 따른 **품명 등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신고**하고, 제245조에 따라 제출하는 송품장 등 서류는 진실에 부합하게 작성·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그러나, 일부 수입화주, 화물운송주선업자, 검역대행업체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(이하 ‘화주등’ 이라 함), 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 신고인(이하 ‘신고인’ 이라 함)이 수입신고 등을 할 때 품명, 수(중)량, 상표,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, 송품장 등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·변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통관을 지체시키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.

※ 수입신고 등은 수입신고, 수입신고 취하,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등 관세법에 의한 모든 신고 및 신청 행위를 말합니다.

□ 이에 따라 우리세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인천항의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 제263조 및 제266조제1항에 의거 화주등 및 신고인에게 수입 물품 등에 대한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하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화주등은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등을 의뢰할 때 송품장, 계약서, 원산지증명서 또는 각종 요건확인서류 등은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※ 화주등은 신고인에게 가공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서류를 위.변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.

2. 관세사 등 신고인은 화주등으로부터 신고 등을 의뢰받은 경우 품명 등 신고사항과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고,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신고인은 화주등에게 가공 또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, 직접 가공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위.변조해서는 안됩니다.

※ 화주등 또는 신고인은 품명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화주등 또는 신고인은 통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세관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 등 제출 요구(보완요구)에 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자료는 송품장, 계약서, 주문서, 원산지증명서 등 신고 시 제출한 서류 및 경위서, 사유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출한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.

4. 화주등 또는 신고인이 본 명령을 위반하여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공 또는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이외에 법 제277조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, 관세사법 제27조에 의한 징계의뢰(신고인)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[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]

위반횟수	1회	2회	3회	4회 이상
부과금액	1천만원	2천만원	3천만원	5천만원

* 세관장 명령 위반 및 거짓 진술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됨(법 시행령 별표5)

※ 허위신고 등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, 통고처분 등 처벌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.

5. (시행일) 본 세관장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 이후 수입신고건부터 적용합니다.

※ 다만, 허위신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, 통고처분 등 처벌과 검사울 상향 등 제재는 즉시 시행합니다.

인천본부세관장

